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 안내표지의 운영과정에서 직진방향 정보 표기방법, 직진, 좌·우회전 금지표시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규격(KS) 번호 및 명칭 변경 반영(안 제7조, 제10조, 제11조)

나. 고속국도의 진입부 및 연결로 분기부에서 필요에 따라 근거리 안내지명 등 2지명을 안내 수 있도록 개선(안 제32조)

다. 고속국도 IC 신설에 따른 고속국도 65호선 원거리 안내지명 변경
(별표 5)

‘동부산 IC’ 신설에 따라 기존 원거리 안내지명 ‘부산’을 ‘동부산’으로 변경

라.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 방향 도로명 표기 방법 개선(별표 20)

직진과 회전방향 도로명이 같을 경우 및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에 새로운 도로명이 있을 경우에 직진방향 도로명 표기 가능

마. 도로명 안내표지의 직진 방향 정보를 중앙정렬로 변경 및 화살표 위치 개선(별표 2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 전화 : 044-201-3911 / 팩스 : 044-201-5591